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외교통일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7월 31일, 김건의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8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9. 3.)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 직접 회부(2025. 9. 2.)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1.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

정가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5. 11. 28.)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

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건의원)

현행법은 전시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규정을 두고 있고, 현재 전시납북자가족 단체는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가족협의회가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전 이후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단체와 달리 설립·활동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단체 활동의 지속성 및 안정성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전 이후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경우에도 법정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전시납북자 단체의 설립 및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전시납북자가족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사우)

범안소위 직접 회부로 검토보고 없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건)

납북자가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안 제17조의2)은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조문(제12조)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안 제17조의2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12조에 옮겨 규정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정의 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

10.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 심사 결과, 부칙으로 단체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를 둠.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외교통일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안 제17조의2에서 납북자가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 제12조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안 제17조의2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12조에 옮겨 규정하되, 해당 단체가 납북자 관련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그 근거 규정인 안 제17조의2제5항을 삭제하는 한편, 안 제17조의2제5항을 삭제하는 경우 안 제17조의3에 따른 조직 제한 등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함께 삭제함(제12조, 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삭제 등).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단체) ① 납북자가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
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자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납북자가족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2. 납북자가족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3.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위한 기록·홍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

급할 수 있다.

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제12조(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6·25전쟁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제12조(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현행과 같음)	<u>제12조(단체) ① 납북자가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자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u> <u>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u> <u>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u> <u>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u> <u>1. 납북자가족 상호간의 상부상조</u>

	<u>제17조의2(단체) ①</u> <u>납북자가족 상호</u>	<u>를 통한 친목 도</u> <u>모</u> 2. <u>납북자가족의</u> <u>복지증진 또는</u> <u>권익신장</u> 3. <u>단체의 설립 목</u> <u>적에 부합하는</u> <u>조사 및 연구</u> 4. <u>그 밖에 납북자</u> <u>및 납북자가족을</u> <u>위한 기록·홍보</u> <u>등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사업</u> ⑤ <u>단체에 대하여</u> <u>는 이 법에서 규정</u> <u>한 것을 제외하고</u> <u>는 「민법」 중 사</u> <u>단법인에 관한 규</u> <u>정을 준용한다.</u> ⑥ <u>국가 또는 지방</u> <u>자치단체는 예산의</u> <u>범위에서 단체에</u> <u>보조금을 지급할</u> <u>수 있다.</u> <u><삭 제></u>
--	--	--

<신 설>

간의 친목을 도모
하고 상부상조함
으로써 자활능력
을 배양하고 납북
자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
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성립한다.

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납북자가족 상
호간의 상부상조
를 통한 친목도
모

2. 납북자가족 상
호간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3.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조사 및 연구사업

4.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에 대한 기억화 및 관련 부대사업

⑤ 단체는 제4항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⑥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u><신 설></u>	<u>수 있다.</u> <u>제17조의3(관련 단</u> <u>체의 조직 제한</u> <u>등) 누구든지 납북</u> <u>자가족을 지원한</u> <u>다는 명목하에 영</u> <u>리를 목적으로 단</u> <u>체를 조직하거나</u> <u>개인적인 활동을</u> <u>하여서는 아니 된</u> <u>다.</u>	<u><삭 제></u>
---------------------------	---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단체) ① 납북자가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자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납북자가족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2. 납북자가족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3.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위한 기록·홍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이 법 제12조에 따른 단체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6·25전쟁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단체) ① 납북자가족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자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납북자가족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2. 납북자가족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3.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위한 기록·홍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

	<u>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u>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u>
--	---